#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3가단5027901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3. 4. 11.

**판결 선고**2023. 5. 9.

##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490,47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90,4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주식회사 E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274529 양수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 7,250,232원 및 그 중 4,796,170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 위 판결은 2017. 9. 22.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E는 위 확정판결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원고를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그 승계집행문 등본은 2022. 2. 28. D에게 송달되었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

D의 부친 F는 2018. 12. 29. 사망하였는데, D는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상속분 2/9에 대하여 자신의 모친인 피고, 남매간인 G, H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9.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2. 10. 18. 접수 제8642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는 상속재산 외에는 아무런 부동산이 없었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근접한 시점의 시가는 1억 200만 원 정도이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인 1996. 5. 28.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I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인 2022. 10. 19.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문경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는 무자력상태였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추정가액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순가치가 상당하였으므로, D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잠정적으로 D의 소유가 된 부동산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본 사실이나 D와 피고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D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D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D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전에 설정되어 있던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 이에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근접한 시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억 200만 원이고, 원고가 2번 근저당권의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을 특별히 달리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인 2,400만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동담보가액은 7,800만 원(= 1억 200만 원 - 2,400만 원)이고, 그 중 D의 지분은 17,333,333원(= 78,000,000원 × 2/9, 원미만은 버림)으로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수한 채권액 한도 내에서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액 14,490,477원(앞서 본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리금을 계산하면 19,877,299원이다)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위 피보전채권 전액 한도내에서 D의 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결국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4,490,477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14,490,4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해근

별지